

[규정 제44호, 제정 2012. 08. 31.]

산업안전보건활동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시설 및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안전관리관계자의 직무수칙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보건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직원이 회사업무에 관계되는 시설물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라 함은 불안정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환경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 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3.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 증진 및 직업병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장"이라 함은 회사의 주된 건물과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업무주관부서) ① 안전관리의 주관부서는 경영관리본부로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주관부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종하고 전사적 안전관리 유지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안전우선) ① 회사의 모든 업무는 안전관리 정신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각 부서는 주관부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지시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각 업무담당부서는 주관부서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차량 등을 우선으로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직

제6조(조직구성의 원칙) 회사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본사는 안전보건 관리조직(이하 “안전조직”이라 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구성) 본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경영관리본부장이 되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인사총무팀장이 된다.
2. 안전조직 내 자위소방대는 최고책임자 이하 전직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방관리업무는 경영관리본부에서 주관한다.

제 3 장 직무

제8조(안전주관부서의 직무) 안전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시행
2.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획 결과보고 및 취합분석
3.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및 대책
4. 각종 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대책의 강구 및 보고
5. 안전보건 점검 및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6. 안전보건 관계요원의 지도 및 독려
7. 안전관리와 관련한 상벌의 평가 및 발의

제 4 장 재해사건예방 및 사후관리

제9조(안전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을 위하여 예방조치,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표준지침의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담당자는 근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1. 안전 위반행위
2. 작업장 안전상태
3. 부적당한 작업상태 등

제10조(긴급위난시 조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① 각 단위조직은 안전한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의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장 및 가정의 안전관리
2. 안전보건지도 및 위험 예지 훈련
3. 기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안전관리 관계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의 실시는 관계법령 및 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12조(휴무 중 안전조치 및 안전점검) ① 각 단위조직 및 소방조직은 3일 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결과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 안전담당자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처리) 재해 사후처리와 관련한 조사 보고,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14조(인적상해 및 재해보상) 인적상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기준은 산재보상 및 배상지침에 따른다.

제15조(보고시기 및 경로) ① 각 사업부에서는 제반 사고 발생시 그 경위를 신속히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은폐, 허위 또는 보고태만 사항 등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자를 징계한다.

- ②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엔 즉시 유선으로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일반재해는 발생 즉시 유선으로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부서의 사고 발생시,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고 내용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사고발생에 대한 수습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감독하에 수습되어야 하며, 신속히 처리한다.

제16조(은폐기준에 대한 예외사항) 기간 내에 해당보고를 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은폐로 간주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통신이 두절된 경우(단, 이 경우 복구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및 불의의 재해로 인해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객관,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제 5 장 보건관리

제17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근로자의 보건과 건강한 사업장유지를 위하여 직원 신규 채용 시 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 가.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 나. 기타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2. 임시건강진단 : 회사는 소속근로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보유자 등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용구) 사업장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20 조(응급조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의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제21조(작업환경의 개선) 작업장이 인체에 유해한 환경일 경우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검토 개선하여야 한다.

제 6 장 상 별

제22조(포상 및 징계 상신)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명령이나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상신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상신) 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대상자 중에서 상신한다.

1. 안전 및 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 운동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 24 조(징계요구대상자) 징계요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25조(포상 및 징계 평가사항) 포상 또는 징계 요구 시 평가 기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율, 도수율 및 손실금액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
3. 무재해 목표 달성실적
4. 안전수칙 실천상태, 교육 및 안전 활동
5.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 7 장 보 칙

제26조(비상연락망 설치) 각 사업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손실금절감 방안 강구) 안전주관부서 및 단위조직은 기발생 된 재해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금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비 예산확보)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공사견적 금액에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공사 실행예산에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 29 조(준용규정)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이 규정을 적용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